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72

발의연월일: 2021. 3. 12.

발 의 자:서영교·강민정·김영배

김영호 • 박상혁 • 박홍근

양정숙 · 오영환 · 오영훈

이해식 · 임오경 · 임호선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 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민의 권익 향상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나 행정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 고 있음. 그러나 이에 비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심사하는 제도 나 전자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허가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등 청문제도를 내실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로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제28조, 제38조의2, 제39조의2 등). 법률 제 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 당사자등은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행정청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행정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다수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 2.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

- 3. 그 밖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인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의 진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전자공청회)"를 "(온라인 공청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전자공청회"를 "온라인 공청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전자공청회를"을 "온라인 공청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자공청회"를 "온라인 공청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자공청회"를 "온라인 공청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전자공청회"를 "온라인 공청회"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의 실시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진행, 재개최에 관하여는 제38조의 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준용한다.
 - 1.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공청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알렸으나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3회 이상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
 - 3. 제38조에 따라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 무산된 경우

제39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전자공청회"를 각각 "온라인 공청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공청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법 시행 전의 공청회의 개최 여부는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	제22조(의견청취) ①
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u>처분 시 제21</u>	3 <u>어느 하나에</u>
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	
<u>청이 있는 경우</u>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 당사자등은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
	제출기한까지 행정청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부터 제6
	<u>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④</u> ~ <u>⑥</u> (생 략)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생 략)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행정청은 제22조제1항 각

<신 설>

② ~ ④ (생 략)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 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 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다수 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 2.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이나부담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오
- 3. 그 밖에 행정청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인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의 진행 방법 및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④</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제38조의2<u>(온라인 공청회)</u> ① ---

-----<u>"온라인 공</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의 실시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의선정, 진행, 재개최에 관하여는 제38조의 3, 제39조, 제39조의2및 제39조의 3을 준용한다.

- 1.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등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공청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 최를 알렸으나 행정청이 책 임질 수 없는 사유로 3회 이 상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
- 3. 제38조에 따라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 무산된 경우

<u>③</u>	-온라인 공청회를
④ 온라인	· 공청회

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u>전자공청회</u> 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 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u>⑤</u> <u>제4항까지에서</u>
온라인 공청
회의
제39조의2(공청회 및 <u>온라인 공</u>
 청회 결과의 반영)
 온라인
 공청회
 .